

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4누14582 재산세 부과 처분 경정 결정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피고, 피항소인 ○○군수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. 8. 21. 선고 2023구합76359 판결
변 론 종 결 2025. 7. 11.
판 결 선 고 2025. 8. 22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1. 7. 9.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재산세 28,140 원 부과처분 중 12,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

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.

원고는 이 법원에서도, 이 사건 건물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주택 전부가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현황에 따른 재산세 부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.

그러나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,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.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제1심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심○○

판사 이○○

판사 이○○